

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 규정

제정 2015.6.10.

개정 2017.9.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4에 따라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.) 창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
2. 창업교육 및 멘토링
3. 창업강좌 운영
4. 창업활동 공간 운용 및 기자재 지원 사업
5. 창업동아리 지원
6. 창업상담
7.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관리
8. 그 밖의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3조(단장) ① 창업지원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함)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창업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17.9.26.)

③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 및 업무) ① 창업지원단에 스타트업PLUS센터, 창업교육센터, 창업보육센터 및 사업화지원팀을 둔다.(개정 2017.9.26.)

② 스타트업PLUS센터장, 창업교육센터장, 창업보육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7.9.26.)

③ 팀장은 창업지원단 소속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7.9.26.)

④ 각 센터 및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 (개정 2017.9.26.)

1. 스타트업PLUS센터 : 창업친화적 학제구축, 창업경진대회, 창업한마당, 거점 창업지원 사업, 창업포럼 및 세미나 개최, 대학 창업네트워크 구축 등
2. 창업교육센터 :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, 창업동아리 지원, 일반인 창업강좌 운영 등 (개정 2017.9.26.)
3. 창업보육센터 : 창업보육 지원, 보육공간 제공, 입주기업 관리, 자금 및 R&D 연계 지원 (개정 2017.9.26.)
4. 사업화지원팀 :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, 사업화 자금지원, 창업교육 및 멘토링 운영 등 (개정 2017.9.26.)

제5조(직원 등) 창업지원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매니저, 선임매니저, 매니저 등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스타트업PLUS센터장 및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13인 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스타트업PLUS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7.9.26.)

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수립
3. 창업지원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7조(자문위원회) ① 창업지원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상의 교외 인사를 포함하여 총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창업지원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2. 창업지원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외협력 지원
3. 그 밖의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
제8조(재정) 창업지원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대학 지원금, 대응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계) ①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는 지원기관의 지침 및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 6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·수행한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7. 9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